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특수관계자·계열사 간 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,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(안 제13조의3제9호의2)

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, 현행 ‘계약 후 2년 경과(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)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’ 삭제

나.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(안 제13조의3)

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,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9호의2가목 중 “해당”을 “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”으로, “주택건설용지”를 “단독주택 건설용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최대 주주인”을 “보유한 지분이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3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 공급을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의3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)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1호·제2호·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	제13조의3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주택건설용지(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)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9의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(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	가. <u>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-- 단독주택 건설용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나. ~ 아. (생략) 10.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 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(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<u>최대 주주인</u> 경우로 한정한다)에 전매하는 경우	나. ~ 아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유한 지분이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</u> ----- -----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부동산개발정책과	
연 락 처	044-201-3438